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56
----------	------

2025년 2월 2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3일,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32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2월 26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영실 의원]

### 가. 제안이유

- 한강공원 내에 있는 다양한 수상시설을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최근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및 서울로얄마리나 침수 사고에서처럼 부상형 시설의 관리 부실 및 검사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정밀검사 등 수상이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또한,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기본원칙에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제3호)
- 2)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제3항)
- 3) 수상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제3항)
- 4) 별표 1 근거 조항 변경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부상형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기본원칙에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강공원, 특히 수상이용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사항이 안전임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의회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더불어 보다 충실한 기본계획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12조는 수상이용시설 중 선박을 제외<sup>1)</sup>한 시설의 침수 등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물 하부 등 시설 전반에 대해 관련 법<sup>2)</sup>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밀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임.

최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로알마리나 침수 사고 원인으로 구조물 하부(부유체)에 관한 정밀검사 미시행 등 관리 부실과 함께 서울시 지침에도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바 있고, 수상이용시설 증가로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별표 1은 공유재산 목록에서 제외<sup>3)</sup>되었으나 현행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1)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안전검사) 등 상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있음.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강아라호’와 용도가 변경된 ‘수상콜택시 승강장’을 공원시설물(수상이용시설) 목록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

**제34조(안전도 검사)**

- ①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제6조에 규정된 도면
  2. 선체구조의 용접, 도장 상태 및 부식 정도, 필요시 선체두께를 측정
  3. 선체 내부 구획검사
  4. 계류줄 및 앵커의 설치 및 마모상태
  5. 배관 및 전기설비 상태 (절연저항시험 포함)
  6. 구멍 및 소방설비 등 안전설비 상태
- ② 안전도 검사는 건조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 ③ 건조검사는 구조물의 건조시 제조 중에 검사하는 것을 칭한다.
- ④ 정기검사는 안전도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수행하는 것을 칭한다.
- ⑤ 수시검사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행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공익에 적합하고”를 “공익성, 시민 안전,”으로, “지속가능한”을 “지속가능하고 안전한”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정해야 할”를 “변경해야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수상이용시설(선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침수 등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물 하부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제3조제3호 관련)”을 “(제1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를 “한강르네상스호,”로,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을 “요트마리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본원칙) 한강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p> <p>1. 2. (생 략)</p> <p>3. 한강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u>공익에 적합하고</u>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u>지속가능한</u>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p> <p>4. ~ 6. (생 략)</p> <p>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u>수정</u>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p> <p><u>&lt;신 설&gt;</u></p> <p>③ (생 략)</p>	<p>제4조(기본원칙)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공익성, 시민 안전,</u> ----- ----- <u>지속가능하고 안전한</u> ----- ----- -----.</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p> <p>② ----- <u>변경</u> <u>해야 할</u> ----- ----- -----.</p> <p>③ <u>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제12조(공원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신설>

제12조(공원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수상이용시설(선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침수 등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물 하부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 1] 공원이용시설(제3조제3호 관련)

구분	공원시설물
1. 수상이용 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u>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u> 인명구조선, 그 밖의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u>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u>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라.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별표 1] 공원이용시설(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공원시설물
1. 수상이용 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u>한강르네상스호, 인명구조선, 그 밖의 선박</u> ), 선박계류장, 선착장, <u>요트마리나</u>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라.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